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의 소급 적용〉
■ 이성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37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의 소급 적용〉
■ 이성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370호)

2025.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개 요	1
【이성권의원안】 (국가공무원법)	1
【이성권의원안】 (지방공무원법)	2
II.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4

I. 개 요

【이성권의원안】(국가공무원법)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성권의원 등 16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5. 2.

다. 회부연월일 : 2025. 5. 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6월 해당 조항을 신설하면서 부칙으로 개정법률 시행 이후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이에 해당 부칙을 삭제하여 시행 이전에 발생한 채용 비위의 관련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23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삭제).

【이성권 의원안】 (지방공무원법)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성권의원 등 16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5. 2.

다. 회부연월일 : 2025. 5. 7.

2. 제안이유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6월 해당 조항을 신설하면서 부칙으로 개정법을 시행 이후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이에 해당 부칙을 삭제하여 시행 이전에 발생한 채용 비위의 관련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208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삭제).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각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의 시행(2021. 12. 9.) 전에 발생한 채용 비위에 대해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을 소급하여 취소함으로써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이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것임(국가공무원법-안 부칙 제3조 삭제, 지방공무원법-안 부칙 제3조 삭제).

구분	현행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823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1823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삭 제>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8208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18208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삭 제>

2. 검토의견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¹⁾ 및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²⁾은 공직의 채용 비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비위 행위로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되어 시행되었으며(2021. 12. 9.), 부칙에서 적용례를 두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공무원 채용비위 행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최근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인력관리실태 감사 결과 지난 10여 년에 걸쳐 대규모 채용비위가 있었음이 밝혀져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³⁾

1)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 ① 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2)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 자녀들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특혜 채용되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서울선거관리위원회 등 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족·친척채용 청탁, 면접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가 적발되었으며,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前사무총장·차장, 인사담당등 총 32명에 대하여 중징계요구, 인사자료통보 등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음(감사원 보도자료, 2025.2.27.).

이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특혜채용 당사자 8명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임용취소 처분을, 채용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한 17명에 대해서는 건책에서 정직에 이르기까지 징계 처분을 하였으나, 임용이 취소된 8명 전원과 징계를 받은 대부분의 직원은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달라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 결과 대부분 기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2021년 12월 9일 이전의 채용비위 행위로 인하여 공무원 채용 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동법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가 불가한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현행법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삭제함으로써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공무원 채용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의 채용 비위 행위에 소급 적용하려는 것인바, 「행정기본법」⁴⁾ 및 헌법재판소 판례⁵⁾에 따르면 법률 적용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위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통한 공익 실현 측

4) 「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5) [1998. 9. 30. 97헌바38 전원재판부]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며, ……

면과 당사자의 신뢰보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의 시행 이전에 발생한 비위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 및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합격 또는 임용취소가 가능하며,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에서 ‘시행 이전에 발생한 비위에 대해 소급적용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적용례 삭제만으로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의 소급적용은 어려운 바, 개정안의 입법실익은 크지 않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는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및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채용 비위에 관련된 공무원의 임용을 제한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행정기본법」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비추어 볼 때 부칙을 삭제하여 소급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의 목적·취지나 소급 적용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2